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8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윤건영·조 국·박지원

김영배 • 이기헌 • 서영석

이성윤 · 복기왕 · 박수현

권향엽 · 강준현 · 염태영

김남근 • 박희승 • 박선원

문대림 · 최민희 · 김병주

이광희 • 신정훈 • 양부남

이재강・김 현・위성곤

장종태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가 아동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을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SNS도 술・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플로리다 주는 14세 미만 아동에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했고 유타·오하이오 주는 각각 18세·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영국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계정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음. 심지어 프랑스 정부의 용역보고서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SNS 사용 금지를 제안한 바 있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에서 13세 아동이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 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11(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① 정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이하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라 한다)는 아동 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연령을 확인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14세 미만인 경우 :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 거부
- ④ 제3항제1호의 조치의 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성 안 제44조의11(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의 아동 보호) ① 정부는 사 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 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를 제공하는 자(이하 "사회관 계망서비스사업자"라 한다)는 아동 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제 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 용하려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③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연령을 확인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14

 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4세
 미만인
 경우 : 회원가

 입
 신청에
 대한
 승낙
 거부

 ④
 제3항제1호의
 조치의
 방법

 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통령령으로
 정한다.